

[서식 예] 채권기압류신청서(구상금 채권 임금 및 퇴직금채권 제3채무자 회생법인)

채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〇〇〇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

금 10,000,000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1. 채무자는 20○○. ○. ○○. 신청외 ◎◎◎로부터 1,000,000원을 대여 받았고, 채 권자는 채무자의 신청외 ◎◎◎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 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신청외 ◎◎◎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채 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신청외 ◎◎◎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로써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1,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 다.
- 2.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 나, 본안 소송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이 사건 가압류할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 이외에는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이 파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이 사건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을 타에 처분하여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3. 다만, 이 사건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

1. 소갑 제2호증

연대보증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통장사본(대여금 반환내역)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제3채무자)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 ○ . ○ . 위 채권자 ○ ○ ○ (서명 또는 날인)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때에는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 차여 고이근 느라차거나 천이근 지수하 네용이 바거되 겨우에는 그근 이차여 H

정명	고의도 구낙하거나 어위도 신물안 내용이 발전된 경우에는, 그도 인하여 모 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 있습니다.
	20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기보전권리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Ž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 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



	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로 대답한 경우]
	①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②현재 진행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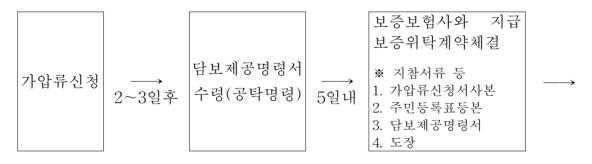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 채권목록 각4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권목록 각4부정도 첨부) 제278조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도 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복절차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2				
비용	·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 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 2. 보증금액
 - ㅇ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다만, 임금, 영업자 예 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⁸⁾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